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4

제출일자 : 2005.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2005. 3. 18)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2)
- 나. 2005.7.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1~2일)함 (안 제18조)
- 나.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함
(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
 - 2)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5. 3. 18)
-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구청장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제9조중 “재외공무원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제12조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으로, 제18조제2항중 “연금법”을 “「연금법」”으로, 제23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동조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 동조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제24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동조제6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신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함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 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권 리나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 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 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 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 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 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현행	개정안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 6월미만</td><td>4일</td></tr> <tr> <td>6월이상 ~ 1년미만</td><td>7일</td></tr> <tr> <td>1년이상 ~ 2년미만</td><td>10일</td></tr> <tr> <td>2년이상 ~ 3년미만</td><td>13일</td></tr> <tr> <td>3년이상 ~ 4년미만</td><td>16일</td></tr> <tr> <td>4년이상 ~ 5년미만</td><td>19일</td></tr> <tr> <td>5년이상 ~ 6년미만</td><td>22일</td></tr> <tr> <td>6년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4일	6월이상 ~ 1년미만	7일	1년이상 ~ 2년미만	10일	2년이상 ~ 3년미만	13일	3년이상 ~ 4년미만	16일	4년이상 ~ 5년미만	19일	5년이상 ~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제18조(연가일수) ①----- -----.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 6월미만</td><td>3일</td></tr> <tr> <td>6월이상 ~ 1년미만</td><td>6일</td></tr> <tr> <td>1년이상 ~ 2년미만</td><td>9일</td></tr> <tr> <td>2년이상 ~ 3년미만</td><td>12일</td></tr> <tr> <td>3년이상 ~ 4년미만</td><td>14일</td></tr> <tr> <td>4년이상 ~ 5년미만</td><td>17일</td></tr> <tr> <td>5년이상 ~ 6년미만</td><td>20일</td></tr> <tr> <td>6년이상</td><td>21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4일																																				
6월이상 ~ 1년미만	7일																																				
1년이상 ~ 2년미만	10일																																				
2년이상 ~ 3년미만	13일																																				
3년이상 ~ 4년미만	16일																																				
4년이상 ~ 5년미만	19일																																				
5년이상 ~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제2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9조(겸직허가) ①----- <삭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구청장 제32조(시행규칙)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1조(시행규칙) (생략)																																					